

2023년 1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 일시·장소 : 2023. 11. 17.(금) 10:00~12:1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 참석 : 10명
 - 위촉 위원(5) : 이영주(위원장), 김원규, 김수정, 임준규, 정흥준
 - 소관 부서(5) : 시민인권보호관(3),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상정안건 : 총 2건

- 보고사항 : 없음
- 의결사항 : 2건(권고 1건, 기각 1건)

심의결과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2건	1건	-	1건
보고사항	-	-	-	-
의결사항	2건	1건 (권고 1)	-	1건 (기각 1)

결과내역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상정결과
의결사항 : 2건(권고 1건, 기각 1건)				
23-40	23신청-22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성희롱	기각	재상정
23-41	23신청-23	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학력에 의한 차별	권고	원안가결

□ 의결사항

- [의안 제23-40호]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성희롱
 - 23신청-22 (기각) 재상정
 - 본 사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사건 추가 조사자료와 사건 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 본 안건을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 [의안 제23-41호] 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시 학력에 의한 차별
 - 23신청-23 (권고) 원안가결
 - 신청인은 서울특별시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모집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非)대학생 청년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여 학력에 의한 차별 및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함.
 -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참가자들의 직무들이 반드시 대학교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개별 기관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 특정 전문지식과 기능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 능력 보유 여부를 서류심사, 면접 등 별도의 채용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모집단계에서부터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비(非) 대학생의 응시 기회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 대학생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대학생 인턴십 사업과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통·폐합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규모 대비 대학생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지원대상을 비(非)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대상에서 비(非) 대학생을 제외하여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서울시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을 지원 자격에서 배제

하고 있으므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통해 타 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된 대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아르바이트 사업의 모집 대상을 대학생에서 비(非) 대학생으로 확대한다고 하여 대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 청년들에게 시정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생으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 결정을 원안 가결함.